

# 한독상공회의소 디이인터네셔널 유한회사

## 정관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상호

회사의 상호는 “한독상공회의소 디이인터네셔널 유한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KGCCI DEinternational Limited”(이하 “회사”라 한다)로 표기한다.

#### 제 2 조 목적 및 업무

(1) 회사는 독일연방공화국(“독일”)과 대한민국(“한국”) 간 경제적 그리고 상거래적 관계의 촉진을 주 업무로 한다. 이 같은 주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는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기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독일 또는 한국 내 사업의 촉진을 위해 시장 진입 및 시장 확대와 관련된 정보,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함
2. 독일 또는 한국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사업체들”)을 대리 및 대행
3. 사업체들을 위한 의사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독일 및 한국에 대한 사업체들의 출장에 대한 편의 제공
4. 소규모 신생 사업체들에 대하여 사무실 공간과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5. 독일과 한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촉진 및 독일 또는 한국 내 사업기회와 관련하여 전문적 교육 및 훈련, 세미나, 기자회견, 심포지엄 및 협의를 마련, 주선하고 실시함
6. 독일과 한국 간 경제적 및 상거래적 관계 또는 독일이나 한국 내 사업기회와 관련된 무역박람회, 무역전시회나 행사를 마련하고 이 같은 무역박람회, 무역전시회나 행사에서 사업체들을 대행 및 대리함
7. 독일 또는 한국에서의 사업기회와 관련된 출판물을 발행하고 광고를 제공 및 촉진함
8. 기업 신용조사 및 관련 서비스를 수행함

9. 독일, 한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의 제품 또는 용역의 조달과 관련하여 사업체들을 지원함
  10. 독일 또는 한국에서의 사업기회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사업체들에 제공함
  11. 부가가치세 환급 회수 서비스를 대행함
  12. 사업체들이 관여된 분쟁을 중재하고 사업체들을 위하여 부채 회수를 지원함
  13. 한국과 독일 내 사업체들에 채용 관련 인력구인 서비스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인적자원 서비스를 제공함
  14. 상기 목적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수행함
- (2) 전술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독상공회의소(“KGCCI”) 또는 제3자와의 협력 여부를 불문하고 KGCCI, 그 회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리고 동인들을 대리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 (3) 회사는 “디이인터네셔널(DEinternational)” 명칭에 대한 상표권 소유자인 DIHK Service GmbH와 긴밀히 협력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DIHK Service GmbH가 제공하는 관련 방침 및 DIHK Service GmbH와의 상표계약에 의해 구속된다.

### 제 3 조            본점과 지점

- (1)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 (2) 회사는 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서 지점, 분사무소 또는 기타 사무소를 설치 및 폐쇄할 수 있다.

### 제 4 조            공고방법

- (1) 회사의 공고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2) 신문 공고 이외에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외에 설립된 법인에 직접 발송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 및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제 5 조            존속기간

회사는 영구적으로 존속한다.

## 제2장 자본금과 출자

### 제 6 조 자본금과 출자

- (1) 회사의 자본총액은 금 일억 오천만(150,000,000) 원으로 한다.
- (2) 회사의 자본은 이를 만 오천(15,000)좌로 나누고, 1좌의 액면가는 만(10,000)원으로 한다.

### 제 7 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회사의 각 사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성명: 한독상공회의소(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85, 8층(한남동, 신원플라자)

출자좌수: 15,000(150,000,000 원)좌

### 제 8 조 사원명부

- (1) 각 사원의 출자 지분은 회사의 본점에 보관되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 (2)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원명부상의 명의개서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질권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원은 회사 소정의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회사의 매 회계연도 최종일 현재 사원명부에 등재된 사원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을 분배 받을 사원으로 정한다. 회사는 매 회계연도 최종일의 익일부터 해당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사원총회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원명부상의 기재변경을 중지한다.

### 제 9 조 사원의 주소 및 인감의 신고

- (1) 모든 사원 또는 그 대리인은 회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자신의 성명, 주소 및 인감(통상적으로 서명을 사용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감에 대신하여 서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 (2) 외국에 거주하는 사원은 한국에서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한국내의 거주소 또는 대리인을 회사에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사항도 회사에 신고되어야 한다.

### **제 10 조 출자인수권, 출자지분의 양도 및 대출**

- (1) 회사의 증자시, 제16조에 기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원은 증자액 중 자신의 소유지분에 비례한 수의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 (2) 사원이 법률에 의하여 신규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출자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출자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자신의 출자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 (3) 사원이 소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 (4)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사원은 상환 받을 수 있는 무이자 대출을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제 3 장 사원총회**

### **제 11 조 사원총회의 종류**

- (1)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사원총회와 임시사원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 (2) 정기사원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최한다.
- (3) 임시사원총회는 회사의 이사의 요청 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 **제 12 조 총회의 장소**

사원총회는 회사의 본점 또는 이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기타 다른 장소에서 개최한다.

### **제 13 조 총회의 소집**

- (1) 모든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한다.
- (2)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일로부터 최소 8일 이전에 등기우편 또는 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모든 사원에게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소집 통지는 사원 전원이

회의에서 또는 회의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 포기될 수 있다. 사원총회는 사원 모두(출석 여부를 불문한다)가 만장일치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이상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없다.

- (3) 사원들은 정기 또는 임시사원총회에 갈음하여 총 사원의 서면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 제 14 조 총회의 의장

대표이사는 모든 사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특정 총회에 관하여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사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제 15 조 의결권

- (1) 각 사원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출자 1좌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2) 사원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그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사원총회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회사의 사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 16 조 의사 정족수 및 결의의 채택

- (1) 모든 사원총회는 관련 법률상 달리 규정되지 않는 이상 의결권 있는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한 의결권 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특별 결의를 요하는 사안은 (i) 각 사원이 보유하는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총 사원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및 (ii) 총 의결권 출자좌수의 최소 75% 이상의 찬성표에 의해 채택된다.
- (2)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모든 사원이 동의한 경우에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모든 사원이 결의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 (3) 결의는 사원총회에서 문서 또는 서면 동의를 회람에 의해 채택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총 출자좌수의 절반을 초과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사원의 동의에 의해 결의가 채택된 경우 특정한 정족수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 (4) 하기 항목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사원들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될 수 있다.

1. 추가 출자좌수의 발행
2. 통상적인 사업 수행과정을 벗어난 계약의 체결
3. 연간 운영 및 자본지출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회사와 회사의 사원 또는 회사의 계열사 간 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
5. 회사와 이사 간 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
6. 금 칠천오백만(75,000,000) 원을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양도 또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질권이나 담보의 설정
7. 금전 차입, 보증의 발행, 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권 제공 또는 우발적 성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에 부채를 발생시키는 기타 다른 행위
8. 대출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회사의 추가 자본조달에 대한 승인
9. 법적 조치 또는 소송의 개시
10. (수단을 불문한) 부동산 또는 기타 중요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승인
11. 한국 상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기타 다른 행위

## 제 17 조 의사록

의사록에는 사원총회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사원총회 의사록은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의사록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 제 4 장 이사

### 제 18 조 이사의 수와 선임

회사에는 이사를 최소 1명과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으며,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된다.

### 제 19 조 임기 및 해임

- (1) 이사의 임기는 사원총회에서 달리 결의하지 않는 한, 취임일 후 3년 내의 최종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사원총회의 종료시에 만료된다.
- (2)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한다.

- (3) 본 조에 기재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는 특별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제 20 조 이사 및 기타 임원

- (1) 사원총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2)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본 정관, 사원총회 및 수시로 채택된 회사의 모든 내부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정한 방침과 결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관리 및 집행할 책임을 진다.
- (3)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격은 KGCCI의 대표(President and CEO) 또는 특별한 사유로 대표직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KGCCI의 부대표(Deputy President and CEO)로 제한된다(대표와 부대표는 KGCCI의 정관에서 정의됨).
- (4) 대표이사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추가 임원들을 선임할 수 있다.

## 제 21 조 보수

- (1)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 (2) 회사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사원총회에서 채택된 임원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제 5 장 결산

## 제 22 조 회계연도

- (1)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2) 회사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3 조 회계시스템

회사의 회계장부는 관련 법령 및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된다.

## 제 24 조 외부 감사인

- (1) 외부 감사인은 한국 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연간재무제표를 감사한다.
- (2) 외부 감사인은 사원총회에서 1년 임기로 선임되며 반드시 한국에서 등록된 감사인이어야 한다. 사원총회는 동일한 외부 감사인을 최장 5년 연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 외부 감사인은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서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사 결과는 정기사원총회에서 회사의 사원들에게 공개 및 설명된다.

## 제 25 조 재무제표

- (1) 이사는 회사의 각 회계연도의 결산을 위하여 영업보고서와 다음 서류들을 부속명세서와 함께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 (2)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서면 보고서는 승인을 위하여 사원총회에 제출되고 영업보고서는 보고의 목적으로 사원총회에 제출된다.

## 제 26 조 배당금의 지급

- (1) 배당금은 정기사원총회에서 확정될 수 있고, 한국 상법 조항에 따라 해당 결의에 명시된 일자에 사원명부에 등재된 사원에게 지급된다.
- (2) 배당금은 사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배당 결의 후 6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 (3) 배당금에 관한 청구권은 그 배당을 결정한 사원총회 결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제26조의 2 중간배당

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해당 결의일자 사원명부에 기재된 사원들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6 장 보칙

## 제 27 조 이사 및 임원의 책임과 면책

회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이사 및 기타 임원이 그의 합리적 판단에 기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사 및 기타 임원이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의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이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청구, 판결, 책임, 손해배상, 비용 및 경비(변호사 보수 포함)에 대하여 이들을 면책하고 이들에게 보상한다.

## 제 28 조 내규

본 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내규 및 기타 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제 29 조 상법의 적용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다.

## 제 30 조 언어

본 정관의 영문본과 국문본은 모두 정본이다. 다만, 상호 모순되거나 의미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본 정관은 2013년 12월 30일에 작성되었다.

성명: 한독상공회의소(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85, 8층(한남동, 한남플라자)

출자좌수: 15,000(150,000,000원)좌

개정  
제 1조  
본 정관은 2015년 2월 4일부터 유효하다.

개정  
제 1조  
본 정관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유효하다.

개정  
본 정관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